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9일, 정진욱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소위심사
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욱 의원)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

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